

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정통신문

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?

최근 학생들의 무분별한 개인형 이동장치<PM>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. 특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충격이 신체로 직접 전달되기 때문에 치명적인 위험성<사망, 장애 등>이 있어,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안전수칙 및 유의사항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, 자녀들이 개인형 이동장치 위험성을 인식하고 교통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
□ 개인형 이동장치<PM, Personal Mobility>란?

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시속 25km 미만, 차체 중량이 30kg 미만 1인용 운송수단(도로교통법 제2조)

전동킥보드	전동이륜평행차	전기자전거*
		

□ 개인형 이동장치 주요 안전수칙

안전수칙	내용	위반 시 처벌 내용	비고(관련규정)
원동기 이상 면허 보유	16세 이상 원동기장치 면허(2종 이상) 보유자만 이용 가능	범칙금 10만원	도로교통법 제43조
안전보호장구 착용	안전모 및 안전보호대 등 필수 착용	범칙금 2만원	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
2명 이상 탑승 금지	반드시 1명만 탑승하고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	범칙금 4만원	도로교통법 제50조 제10항
보도 주행 금지	자전거 전용도로에서만 주행하고, (횡단)보도 주행 금지	범칙금 3만원	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

* 어린이(13세 미만)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금지 위반 시 보호자 과태료 10만 원 부과(도로교통법 제11조 제4항)